

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

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 제9조(안전관리인증기준) 및 같은법 제31조(영업자등의 준수사항) 규정에 의거하여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독촉(체납사실)고지 및 이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우편물 반송(폐문부재)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.

2023. 3. 31.
경 기 도 지 사

1. 공고제목: 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 위반 대상자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 고지
2. 공고기간: 2022. 3. 31. ~ 4. 13. (14일간)
3. 공시송달 대상

| 업체명 | 대표자 | 주 소 | 위반사항 | 본세(원) | 가산금(원) | 비고 |
|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|
| (주)청** | 장*웅 | 양주시 광적면 삼일로 **번길 ***, 1**동 1**호 | 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 · 제9조(안전관리인증기준), · 제31조(영업자등의 준수사항) | 10,000,000 | 1,500,000 | |

4. 공시송달 내용

- 가. 위 공시송달 대상자는 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 제9조(안전관리인증기준) 및 같은법 제 31조(영업자등의 준수사항)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었음 알려드리며, 조속한 시일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- 나.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「지방세징수법」제33조 및 「국세징수법」 제24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.
- 다. 이의제기 및 과태료 납부방법에 관한 자세한 안내사항은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 - 주소: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1 동물방역위생과
 - 전화: 031-8030-3511
 - 팩스: 031-8030-3479